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 ① 효나눔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한다)과 수급자간의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20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2025년 급여 유형별 장기 요양 수가 >

방문요양 시간당 급여비용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시간	금액	방문목욕	
30분 이상	17,450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8,990
60분 이상	25,32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80,230
90분 이상	34,120	차량미이용 60분 이상	50,100
120분 이상	43,430	차량 미이용 40분 이상	40,080
150분 이상	50,640	방문간호	
180분 이상	57,020	15분 이상~30분 미만	42,880
210분 이상	63,530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
240분 이상	70,080	60분 이상	64,690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별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구분	시간	금액	최대횟수	사용금액	본인부담		
					15%	9%	6%
1등급	120분 이상	43,430	57	2,475,510	371,320	222,790	148,530
	150분 이상	50,640	49	2,481,360	372,200	223,320	148,880
	180분 이상	57,020	44	2,508,880	376,330	225,790	150,530
	210분 이상	63,530	39	2,477,670	371,650	222,990	148,660
	240분 이상	70,080	35	2,452,800	367,920	220,750	147,160
2등급	120분 이상	43,430	53	2,301,790	345,260	207,160	138,100
	150분 이상	50,640	46	2,329,440	349,410	209,640	139,760
	180분 이상	57,020	40	2,280,800	342,120	205,270	136,840
	210분 이상	63,530	36	2,287,080	343,060	205,830	137,220
	240분 이상	70,080	33	2,312,640	346,890	208,130	138,750
3등급	120분 이상	43,430	35	1,520,050	228,000	136,800	91,200
	150분 이상	50,640	30	1,519,200	227,880	136,720	91,150
	180분 이상	57,020	26	1,482,520	222,370	133,420	88,950
	210분 이상	63,530	24	1,524,720	228,700	137,220	91,480
	240분 이상	70,080	21	1,471,680	220,750	132,450	88,300
4등급	120분 이상	43,430	32	1,389,760	208,460	125,070	83,380
	150분 이상	50,640	27	1,367,280	205,090	123,050	82,030
	180분 이상	57,020	24	1,368,480	205,270	123,160	82,100
	210분 이상	63,530	22	1,397,660	209,640	125,780	83,850
	240분 이상	70,080	20	1,401,600	210,240	126,140	84,090
5등급	120분 이상	43,430	27	1,172,610	175,890	105,530	70,350
	150분 이상	50,640	23	1,164,720	174,700	104,820	69,880
	180분 이상	57,020	21	1,197,420	179,610	107,760	71,840
가족케어	60분	25,320	20	506,400	75,960	45,570	30,380
	90분	34,120	30	1,023,600	153,540	92,120	61,410
			31	1,057,720	158,650	95,190	63,460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목욕	금액	본인부담			방문간호	금액	본인부담		
		15%	9%	6%			15%	9%	6%
차량이용(자랑내 목욕)	88,990	13,349	8,009	5,339	15분 이상~30분 미만	42,880	6,432	3,859	2,573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80,230	12,035	7,221	4,814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	8,066	4,839	3,226
차량미이용 60분 이상	50,100	7,515	4,509	3,006	60분 이상	64,690	9,704	5,822	3,881

제5조 (급여비용 청구)

-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